

## 25. 아일랜드(Ireland)

### 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838년(구빈법), 1908년(노령부조), 1911년(장애보험), 1935년(유족보험)
- 현행법 : 2005년(사회복지)

### 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

### 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주간소득 € 38 이상인 근로자 (가내 근로자 포함)
  - 연간소득 € 5,000 이상인 자영업자 : 기여제 노령, 유족, 장애 연금
  - 적용 제외 : 주간 소득 € 38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; 1995년 4월 6일 신규 가입이 제한되기 전에 공무원 연금제도에 영구적으로 가입되었던 공무원(유족 연금) ; 임시직 가내 근로자
- 사회부조
  - 아일랜드 상주자
  - 상당 기간 아일랜드에서 거주하였고 앞으로도 살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 가능해야함

### 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
    - 주간소득의 4% (주간소득이 € 352 ~ € 424의 사이인 경우 보험료는 최대 € 12 삭감 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선 : € 352.01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선 없음
    - 보험료는 질병현금수당과 출산수당, 산재수당, 실업 수당의 재원이 됨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

- 연간소득의 4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영자의 연간 소득은 자본수당 및 공인된 노년퇴직연금(사적연금)의 보험료를 제외한 총 소득을 기초로 함. 보험료는 연간 납부
- 보험료는 출산현금수당과 입양 수당의 재원이 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 - 주간소득이 €376 이하인 근로자는 임금의 8.6%; 주간소득 €376 초과 근로자는 임금지불총액의 10.85%
  - 보험료산정을 위한 상한선 없음
  - 보험료는 질병현금수당 및 출산, 입양, 산재, 실업 수당의 재원이 됨
- 사회보험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 : 세수입으로 결손금 총당; 사용자로서 납부
- 사회부조 : 세수입 비용 전액

## 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기여형 국가연금 (사회보험)
  - 56세 이전에 제도에 가입한 자가 66세 도달한 경우 (2021년에 67세로, 2028년에 68세로 도달 연령 단계적 증가)
  - 2012년 4월 6일 이후에 퇴직연령 도달시, 가입자는 반드시 52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어야 함.
  - 최고 연금은 고용관계 개시일 또는 1979년 이후 중 늦는 날로부터 66세 전에, 연평균 48주 이상의 지불 기간과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을시 지급
  - 부분연금 : 고용관계 개시일 또는 1979년 이후 중, 늦는 날로부터 보험료 납부 기간 또는 지불기간이 연평균 10~47주여야 함.
  -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은 없음
  - 은퇴 여부는 필수요건이 아님
  - 주당보험료의 연평균 산정 시, 1994년 이후 12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한 자에게 지급; 최대 20년까지 고려하지 않음
  - 가입자가 양육, 질병, 출산, 영구적 장애, 실업 및 산재 수당을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 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조사 기반) : 총 주간소득이 € 310 이하의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지급(피부양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이혼한 배우자, 또는 가입자의 부양

자녀를 양육한 16세 초과인 자); 가입자의 배우자, 동성배우자, 동거배우자는 총 주간소득이 최고 € 400 이하인 경우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학생인 경우 22세 미만)에게 지급

- 비기여형 국가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 - 66세 (2021년에 67세, 2028년에 68세로 점진적 증가)이고 기여형 국가 연금의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삭감된 기여형 국가연금 수급자인 자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자격을 갖춘 성인(피부양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동거중인 배우자, 이혼한 배우자, 또는 가입자의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16세 초과한 자)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학생은 22세 미만)에게 지급

## 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1년 동안(중증장애자의 경우는 1년 미만) 일반질병급여 지급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, 최종과세연도에 48주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가입인정기간을 포함한 260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 - 가입자가 생애동안 근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청구되기 전에 근로불능의 기간이 12개월 지속되었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불가능하다고 예측될 때 급여가 지급됨
  - 가입자가 양육, 질병, 출산, 영구장애, 실업, 또는 산재에 해당하는 현금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보험료는 납부됨
  - 고용 및 사회안전부에서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에 따라 근로불능 정도를 검토함
  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조사 기반) : 총 주간소득이 € 310 이하의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지급(피부양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이혼한 배우자, 또는 가입자의 부양 자녀를 양육한 16세 초과인 자); 가입자의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동거중인 배우자는 총 주간소득이 최고 € 400 이하인 경우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완전 학생인 경우는 22세 미만)에게 지급
  - 장애연금의 해외 지급 가능
- 맹인연금 (사회부조, 자산 조사) : 심각한 시력저하인 18세~66세인 자
  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조사 기반) : 총 주간소득이 € 310 이하의 자격을 갖춘 성인에게 지급(피부양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이혼한 배우자, 또는 가입자의 부양 자녀를 양육한 16세 초과인 자); 가입자의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동거중인 배우자는 총 주간소득이 최고 € 400 이하인 경우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완전 학생인 경우는 22세 미만)에게 지급
- 장애수당 (사회 부조, 소득 조사)
  - 16세 ~ 66세, 1년 이상 지속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판단되어야

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급자 연령, 경력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절한 근로 활동을 하기에 심각하게 근로능력이 감소된 자

- 피부양자 보조금 : 자격을 갖춘 성인(피부양 배우자, 동성 배우자, 동거중인 배우자, 이혼한 배우자, 또는 가입자의 부양 자녀를 양육하는 16세 초과한 자)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(학생은 22세)에게 지급

- 간병인 급여 (사회보험)

- 16세 ~ 66세 연령의 최근 26주 동안 8주 이상 고용된 자, 주간 16시간 또는 매 2주 32시간 집에서 상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를 간병한 자. 간병인은 고용되거나 자영자이거나, 주간 소득이 €332.50 이하면서 집 외부에서 주 15시간 동안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
- 간병인은 최종 과세연도의 39주를 포함하여 총 156주의 납부기간 또는 급여 청구 전 최종 2년의 각 과세연도 중 12개월 또는 26주의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조사) : 가입자의 배우자, 동성배우자 또는 동거배우자의 총 주간소득이 €400 이하일 경우 18세 미만의 양육 자녀에게 지급 (학생은 22세)

- 간병인 수당 (사회부조, 자산조사)

- 18세 이상이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거주자가 상시간병 및 주의가 필요한 16세 이상인 자를 돌보며 동거해야 함. 간병인은 고용되거나 자영자이거나, 집 외부에서 주 15시간동안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음. 간병인은 본인이 부재했을 때 적절한 케어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. 16세 미만인 자를 간병할 경우 재가보호수당이 지급됨.
- 피부양자 보조금: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에게 지급 (학생은 22세)

- 간병인 보조금 : 간병인 급여, 간병인 수당, 재가보호수당 수급자에게 지급  
간병인은 6월 첫주 목요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간병했어야 함

○ 유족연금
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유족 배우자연금 (사회보험)

- 사망자 또는 사망한 배우자, 이혼한 미망인(홀아비), 동성배우자 또는 이혼한 동성배우자는 연평균 최소 39주 이상 포함 26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사망한 일자나 66세 도달한 날 직전 3년 이상 5년의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, 둘 중 더 빠른 것으로 적용
- 부분 연금 : 연평균 24~47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사망일 또는 66세 도달일(더 빠른 날) 전에 고용관계 개시일 이후 인정된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- 연평균 주간보험료 납부 산정 시, 1994년 이후부터 12세 미만 또는 장애가

- 있는 자녀를 양육한 자; 최대 20년은 간주하지 않음
- 양육, 질병, 출산, 영구장애, 실업, 산재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의 수급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됨
- 미망인 및 유족 배우자연금은 동거를 포함한 재혼 시 정지됨
- 기여형 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미망인 부모는 편부모수당 수급자격이 될 수 있음
- 피부양자 보조금 :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게 지급 (정규 학생은 22세 미만)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수당 (사회보험)
  - 1999년 12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, 가입자의 사망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났으며, 18세 미만(정규 학생은 22세)의 부양자녀를 지닌 미망인 또는 혼인 관계의 배우자에게 지급. 편부모 수당, 기여제 미망인 및 유족 배우자연금, 사망 수당 또는 비기여형 국가연금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.
  - 해외 지급 가능
- 비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수당 (사회부조, 소득조사 기반)
  - 유족 배우자가 동거하지 않거나,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연금 자격이 되지 않거나 부양자녀가 없고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지급
- 기여형 후견인 수당 (사회보험)
  - 18세 미만인 아동(정규학생은 22세)의 부모나 계부모가 26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는 경우 고아의 후견인에게 지급.
- 비기여형 후견인 수당 (사회부조, 소득조사 기반)
  - 자산이 일정 수준 미만의 고아의 후견인에게 지급.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함 (정규 학생은 22세)

## 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연금

- 기여형 국가연금 (사회보험)
  - 최대연금액 : 주당 € 238.30
  - 80세 이상인 자에게 매주 € 10 추가 지급
  - 66세 이상이거나 독신자에게 매주 € 9 추가 지급
  - 부분 연금 : 주당 € 95.20 ~ € 233.60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66세 미만의 수급 자격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€ 158.80 까지 지급, 66세 이상인 자는 주당 €213.50 까지 지급 (수급 자격이 있는 성인이 부분연금을 수급하거나 총 주간소득이 € 100 ~ € 310인 경우 감액), 자격이 되는 아동 1인당 주당 € 29.80 지급(가입자가 성인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고, 가입자의 배우자, 동성배우자 또는 동거

배우자의 주간 총소득이 € 310 ~ € 400 인 경우, 주당 € 14.90 지급)

- 비기여형 국가연금 (사회부조, 소득 조사)
  - 주당 최대 €227 지급
  - 80세 이상인 자 : 주당 €10 추가 지급
  - 66세 이상인 자 혹은 독거주자 : 주당 €9 추가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수급 자격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최대 €150 지급(66세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성인은 최대 €147.40), 수급대상 아동 1인당 € 29.80 지급 (수급자가 성인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€ 14.90)

○ 영구장애연금

- 장애연금 (사회보험)
  - 주당 € 198.50 지급
  - 홀로 거주하는 가입자는 주당 €9 추가 지급; 특정 연안 섬 거주자는 주당 € 12.70 추가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 조사) : 수급자격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최대 € 141.70 지급, 2014년 1월 2일 전 연령이 66세 이상인 자에게 주당 € 213.50 지급 (주간 소득이 € 100 ~ € 310 의 성인은 감액 적용), 피부양 자녀 1인에 대하여 주당 € 29.80 지급 (수급자격 성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입자의 배우자의 주간 총소득이 € 310 ~ € 400 인 경우에는 € 14.90 지급
- 맹인연금 (사회부조, 소득 조사)
  - 주당 최대 €193 지급
  - 80세 이상인 자는 주당 €10 추가 지급; 66세 이상이거나 독신거주자는 주당 €9 추가 지급; 특정 연안 섬 거주자는 주당 €12.70 추가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(소득 조사) : 수급자격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최대 € 128.10 지급 (주간소득이 €100 ~ €310 인 수급자격 성인은), 피부양 자녀 1인당 주당 € 29.80 지급 (성인보조금 수급자가 아니거나 총 주간소득이 €310 ~ €400 인 수급자의 배우자, 동성배우자, 동거배우자의 경우 €14.90)
- 장애수당 (사회부조, 소득 조사)
  - 주당 최대 €193 지급. 66세 이상이거나 독신거주자는 주당 €9 추가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: 수급자격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€128.10 지급, 피부양자 자녀 1인당 주당 € 29.80 지급 (성인보조금 미수급자는 €14.90)
- 간병인 급여 (사회보험)
  - 1명 간병할 경우 주당 최대 €210 지급, 2명 이상을 간병할 경우 주당 €315 지급. 급여는 간병을 받는 1인 당 최대 104주 동안 지급됨. 6주 이내로 급여를 청구한 자는 간병을 받는 동일인에 대해 급여를 다시 청구

하기 전 최소 6주를 더 기다려야 함

- 피부양자 보조금(소득조사) : 피부양자녀 1인당 주당 €29.80 지급(수급 자격 성인 보조금 받지 아니한 자와 수급자격성인 및 혼인이나 동거관계의 배우자의 주간소득이 €310 ~ €400인 자는 자녀 1인당 주당 € 14.90)

- 간병인 수당 (사회부조, 소득 조사)

- 간병 1인당 주당 최대 € 209 지급; 간병 2명 이상인 자는 € 313.50; 66세 이상인 자 주당 € 247, 66세 이상인 2명을 간병할 경우는 주당 € 370.50
- 간병을 받는 자가 사망 후 또는 영구주거의료시설에 입소한 후 12개월 동안 수당 지급
- 피부양자 보조금 : 피부양자녀 1인당 € 29.80 (수급자가 결혼했거나, 동성 결혼 또는 동거를 할 경우 € 14.90)
- 간병인 수당 외에 특정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간병인 수당의 50% 지급

- 간병인 보조 수당

- 6월에 연간 €1,700 지급
- 동일인에 2명의 주간 교대 간병인이 있을 경우 분할지급 가능

○ 유족 연금
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연금 (사회보험)

- 65세 이하인 자 유족에게 주당 €198.50 지급; 66~79세인 자 € 238.30 지급; 80세 이상인 자 주당 € 248.30 지급. 66세 이상이고 독신거주자인 경우 주당 € 9 추가 지급
- 부분 연금 : 감액연금 지급
- 피부양자 보조금: 피부양자녀 1인당 € 29.80 지급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급여와 결합될 수 있음

- 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수당 (사회보험)

- 일시금 € 6000 지급

- 비기여형 미망인(홀아비) 및 유족 배우자연금 (사회부조, 소득 조사)

- 주당 최대 € 193 지급

- 기여형 후견인 급여 (사회보험)

- 주당 € 176 지급

- 비기여형 후견인 급여 (사회 부조, 소득 조사)

- 주당 최대 € 176 지급

## 7. 관리운영기관

- 고용 및 사회 안전부 (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)
  - <http://www.welfare.ie/>
  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의 제도 관리운영
  
- 국세청 (Revenue Commissioners)
  -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자료>